



제42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상담 및 교육 위탁 임시조치 불이행 시 과태료 부과〉
■ 전용기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206호)

2025. 3.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이 은 정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전용기 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4.
3. 회 부 일 : 2024. 11. 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임시조치로 부과하고,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의 결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결정으로 임시조치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아동학대의 초기 단계에서 상담 및 교육을 받는 것이 아동학대행위자의 성행교정에 효과적이므로 이를 강제하기 위하여 상담 및 교육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처벌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아동학대행위자가 상담 및 교육 위탁에 해당하는 임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63조).

현행	개정안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5.·6. (생략) ② (생략)	제63조(과태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u>4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9조 제1항제5호에 따른 임시조치 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u> 5.·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2. 검토의견

□ 현행법 제1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임. 현행법상 해당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별도의 제재가 없음. 이에 개정안은 제19조제1항제5호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위반행위자에 대해 제재수단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취지인 것으로 보임.

□ 현행법상 판사가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임시조치를 할 수 있음(제19조).¹⁾

임시조치의 종류에는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제1호),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제2호),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제3호),

1)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아동학대처벌법”) 제19조(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①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아동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아동학대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임시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정구성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제4호),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제5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제6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제7호)가 있음.

□ 다만, 아동학대행위자가 임시조치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고 있으나²⁾,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처벌 또는 제재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 현행법상 아동학대행위가 발생했을 때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는 긴급임시조치(제13조), 임시조치(제19조), 보호처분(제36조), 피해자보호명령(제47조) 및 임시보호명령(제52조)이 있고,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한 벌칙규정은 제59조와 제63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이를 정리하면 다음 표와 같음.

2) 아동학대처벌법 제59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학대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1. 제19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2. 제3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3. 제47조에 따른 피해아동보호명령, 제52조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이 결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아동학대행위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아동학대행위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8조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 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현행법상 임시조치 등 불이행에 대한 벌칙 >

근거규정	조치 및 명령 내용	벌칙규정
긴급임시조치(제13조) 불이행	제19조의 임시조치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제63조)
임시조치(제19조) 불이행	1.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제59조)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없음
보호처분(제36조) 불이행	1.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제59조)
	4.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수감명령 5.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6.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감호위탁시설 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 7. 의료기관에의 치료위탁 8.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63조)
피해자보호명령 (제47조) 불이행	1. 아동학대행위자를 피해아동의 주거지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3.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게 전기통신을 이용하여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 4. 피해아동을 아동복지시설 또는 장애인복지시설로의 보호위탁 5. 피해아동을 의료기관으로의 치료위탁 5의2. 피해아동을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으로의 상담·치료위탁 6. 피해아동을 연고자 등에게 가정위탁 7. 친권자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친권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8. 후견인인 아동학대행위자의 피해아동에 대한 후견인 권한의 제한 또는 정지 9.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결정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제59조)
임시보호명령(제52조) 불이행	제47조의 피해자보호명령 중 어느 하나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제59조)

□ 이와 같이 현행법은 제19조의 임시조치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제36조의 보호처분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하여는 동일한 수준으로 형사처벌하고 있고, 보호처분으로서 사회봉사·수강명령, 보호관찰, 감호위탁, 치료위탁, 상담위탁 등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는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³⁾하고 있으나, 제19조의 임시조치 중 유사한 내용의 상담위탁, 요양시설에의 위탁에 해당하는 임시조치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임시조치 제5호의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 상담 및 교육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하여도 보호처분 제8호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아동학대행위자와 동일하게 제재하려는 것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 다만, 개정안은 제19조의 임시조치 중 제6호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제재수단에 대한 사항은 없는데, 제6호의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3) **아동학대처벌법 제63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판사의 아동보호사건의 조사·심리를 위한 소환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법경찰관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 수행하는 현장조사를 거부한 사람
- 3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2제1항 후단을 위반하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출석·진술 및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 또는 자료를 제출한 사람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긴급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5. 정당한 사유 없이 제36조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집행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6. 정당한 사유 없이 제39조에 따른 보고서 또는 의견서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사람

유사 입법례인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가정폭력처벌법”)4)에서도 이 법과 같이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 외에는 별도의 제재수단을 두고 있지 않음.

<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불이행에 대한 벌칙 >

근거규정	조치 및 명령 내용	벌칙규정
임시조치(제29조) 불이행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등으로부터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2년 이하 징역, 2천만원 이하 벌금, 구류(제63조)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없음

4) **가정폭력처벌법 제29조(임시조치)** ① 판사는 가정보호사건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가정폭력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이나 그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5. 국가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6. 상담소 등에의 상담위탁

제63조(보호처분 등의 불이행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행위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拘留)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처분이 확정된 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2. 제55조의2에 따른 피해자보호명령 또는 제55조의4에 따른 임시보호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

② 정당한 사유 없이 **제29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시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가정폭력행위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③ 상습적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가정폭력행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3조의2제1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의 실행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임시조치 제5호에 해당하는 상담 및 교육 위탁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유사 입법례 및 제도의 실효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개정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무부**는 임시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하며,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행위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제공하는 상담교육 등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 시설에 위탁’하는 제6호의 임시조치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 **법원행정처**는 입법취지에 공감하며, 임시조치 제5호는 아동학대행위자의 개선·교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개정안에 따르면 상담·교육이 적시에 시행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입법정책적 결정사항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051